

瑞山市住民監査請求에 관한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總務委員會  
2000. 6. 9

##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2000. 3. 14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2000. 3. 14
- 라. 上程日字 : 2000. 3. 22, 6. 9

## 2. 提 案 說 明 要 旨 (提 案 說 明 : 企 劃 監 査 擔 當 官 金 知 榮)

### 가. 提 案 理 由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수를 공표하려는 것임.

### 나. 主 要 骨 子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700명 이상으로 한다.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지난 99년 8월 31일 신설된 사항으로써,
- 동법 제13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시·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 본 안에서 제시한 700명은 본 시 20세 이상 주민총수 105,749명의 150분의 1로써, 동조에서 정한 범위내에 인원으로 본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주민의 감사청구를 상급기관에 하도록한 규정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바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됨.

###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 6. 審查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41 호
의결년월일	2000. 3. . (제 회)

##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0. 3. 14.

#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1
----------	-----

제출년월일 : 2000. 3. 14  
제출자 : 서산시장

##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이에따른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를 공표하려는 것임.

## □ 주요 골자

-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700명 이상으로 한다.

## □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일(2000. 2. 16 ~ 3. 6)
- 충남도 감사 16070 - 131(2000. 2. 8)호.

##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700명 이상 이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